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통보서를 소유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09. 14.

조 리 읍 장



1. 공고내용: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보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10. 16.(금)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홈페이지 공고
4. 법적근거: 「농지법」 제34조 및 제4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소유자	농지 소재지	위반 현황	위반 규정	반송 사유
1	문0희	조리읍 대원리 566-7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 협의위반) - 농지 전용허가(협의)없이 타용도로 사용 -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존치	농지법 제34조	폐문 부재 등

6.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관내 농지에 대하여 위반 사항이 있어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농지원상회복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 바랍니다.

나.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031-940-8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